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합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12. 15.

판결 선고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478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가. 원고는 수처리 설비의 운영 및 정비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대외사업 재무회계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.

나.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받은 C 주식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. 5. 7.경부터 2021. 6. 25.경까지 위 회사 계좌에서 29억 1,790만 원을 횡령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가 횡령한 돈 중 2,478,700,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,478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2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횡령금 중 15억 원만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재판장판사사경화

판사나소라

판사김다혜